

코리아신탁(주) 신탁보수(수수료) 부과기준

상품별로 신탁사업의 수익 또는 신탁재산 가격 등을 기준으로 한 당사의 규정에 근거하여 보수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
※ 다만, 고객 및 사업관계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가감조정하여 책정 하고 있습니다.

1. 관리신탁 보수

가. 갑종 관리신탁(택일)

1) 신탁재산가격 기준

신탁재산	보수요율	보전액
5천만원까지	년 10/1,000	-
2억원까지	년 9/1,000	5만원
5억원까지	년 8/1,000	25만원
10억원까지	년 7/1,000	75만원
10억원초과	년 6/1,000	175만원

2) 총수익 기준

총수익(년)	보수요율	보전액
5백만원까지	10/100	-
2천만원까지	9/100	5만원
5천만원까지	8/100	25만원
1억원까지	7/100	75만원
1억원초과	6/100	175만원

3) 신탁재산 및 총수익 기준

$$(\text{신탁재산가격 기준보수} + \text{총수익 기준보수}) \times 1/2$$

나. 을종 관리신탁

신탁재산가격	보수요율	보전액
5천만원까지	년 30/10,000	-
2억원까지	년 20/10,000	5만원
5억원까지	년 15/10,000	15만원
10억원까지	년 13/10,000	25만원
10억원초과	년 10/10,000	55만원

2. 처분신탁 보수

처분가격	보수요율	보전액
1억원까지	16/1,000	-
5억원까지	14/1,000	20만원
10억원까지	12/1,000	120만원
50억원까지	10/1,000	320만원
100억원까지	8/1,000	1,320만원
500억원까지	6/1,000	3,320만원
500억원초과	4/1,000	13,320만원

※ 처분시점까지 수탁재산을 관리한 경우 관리(신탁)보수는 별도

3. 담보신탁 보수

- 재산관리보수 : 수익권증서 발급금액의 0.55% 이내
- 재산처분보수

처분가격	보수요율	
	일시불 처분시	할부불 처분시
1억원까지	8/1,000	10/1,000
2억원까지	7/1,000	9/1,000
5억원까지	6/1,000	7/1,000
10억원까지	5/1,000	6/1,000
10억원초과	4/1,000	5/1,000

4. 분양관리신탁보수

분양관리신탁보수는 사업관련 계약 및 기타 약정에 의거 수행하는 업무내용에 따라 다음의 보수를 각각 별개로 산정하여 합산

구분	신탁보수 산정기준	비고
관리보수	을종관리신탁의 보수산정기준 및 보수요율 준용	
담보보수	담보신탁의 보수산정기준 및 보수요율 준용	

※ 자금관리대리사무보수는 별도

5. 토지신탁보수

구 분			보수산정방법
개발형 (차입형) 토지신탁	임대형 기본보수	개발보수	건축비(추정) ¹ × 3.0/100
		임대보수	전세환산가(추정) ² × 2.0/100
	분양형 기본보수	개발보수 + 분양보수	[분양예정금액총액(추정)+건축비(추정)]×2.5/100
관리형 토지신탁			분양예정금액총액(추정)× 2.0/100 이내
성 과 보 수 ³			신탁사업수익 × 20%

- 주1. 건축비는 공사비(조경공사비 포함), 설계·감리비, 인입공사비, 철거비, 모델하우스 건축비, 조형물 설치비 등을 포함한 금액임.
- 주2. 전세환산가란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임. 단, 월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하기 위한 기준율은 월임대료 산정시 적용한 이율임.
- 주3. 성과보수의 경우,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취여부 결정
- ※ 신탁재산의 위치·용도, 사업의 규모·난이도·안정성·기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

6. 대리사무보수

- 신탁사업의 분양가액의 0.3% ~ 1.5%
- ※ 신탁회사의 수행업무 범위에 따라 달리 적용